

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

일 시 : 1978. 8. 28 16:00
장 소 : 건설부 대회의실

참석 : 건설부 : 주택도시국장 김창곤
건축과장 김영철
행정계장 윤항노

본회 : 회장 강봉진
총무이사 김두섭
이사 박우하, 유경철, 한영수, 장종율
감사 양상규

이 날 회의에 앞서 주택국장으로부터 지난 25일 ○ 호텔에서 있었던 사법시행령개정에 따른 (국회건설위원회) 소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이 참석한 조찬회의에서의 결론으로 사후신고로된 설계도서의 신고는 사전신고로 하되 사전심사를 해서 설계도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과 출석치 못한 두 위원에 대한 동의도 김녹영 위원이 양해를 얻겠다는 제의가 있었다는 경유설명을 본협 참석자들에게 한 후 설계도서의 신고가 사전 심사제도로 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

첫째, 년간 약 250,000건의 이르는 방대한 량의 설계도서를 심사할 때 그 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회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.

둘째, 합동사무소에서만이 할 수 있는 설계도서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므로 합동사무소의 품위도 높이기 위해 설계도서의 심사를 제외하고 그 외의 도서만을 심사하는 방안.

셋째, 심사의 기준의 설정방안

위와 같은 건설부 측이 제시한 제반 문제점이나 그 해결방안에 대한 본협 의견으로서.

첫째, 서울시지부에서 약 3년간 도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율적인 도서심사를 실시한 결과 도서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고 허가판서에서도 도서가 일단 협회에서 세밀하게 심사 되었으므로 큰 부담을 갖지 않고서도 허가 처리가 될 수 있었다.

그러나 도서의 량이 많으므로 인해 심사가 끝나기까지는 1일 내지 2일이 소요됨에 따라 일부 회원의 불평이 있고 또한 도서심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 후 중단되었다.

그런 점으로 미루어 설계도서의 심사는 설계도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절대 필요하며 위법 불실 설계도 근절되고 건축허가 행정도 명랑화 될 것이다. 심사에 따른 예산문제도 다소는 과중되기는 할 것이나 효과에 비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도서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.

둘째, 도서심사를 할 경우

현재 하등의 법적인 근거없이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 산하 각구청에서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심사가 폐지되어야 하고 뚜렷한 심사기준이 없이 실시되고 있는 미관심의위원회에서도 심사 기준을 설정해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.

셋째, 전체 설계도서에 대한 심사는 물량으로 보아 일정 건물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. 일정 규모는 주택과 그 외의 건물로 구분을 생각 할 수도 있는데, 위법 건축은 오히려 규모가 큰 건물 보다 주택의 경우 심하다.

위와 같은 의견교환 후 전체 회원들의 관심사이던 설계도서의 사전 또는 사후 신고에 대해 국회건설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도서심사를 조건부로 하는 사전신고 문제를 도서심사 방안과 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우려했던 설계도서의 신고문제는 전체 회원의 여망대로 사전신고제가 채택될 전망이다.

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차제의 2급 건축사의 대하여도 오랫동안 실무에 종사하였고 건축사자격시험 문제 중 3과목은 가히 응시한 것이므로 과목면제를 해서 구제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부 의견을 피력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건설부 측은 2급 건축사는 법개정으로 업무량이 $1,500m^2$ 는 상향되는 혜택을 이미 주었고, 3과목을 응시하였다고는 하나 시험의 질이 각각 다르므로 응시과목이라도 면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다만 2급 건축사는 오랫동안 실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설계를 잘 할 것이므로 설계시험의 점수를 200점으로 하고 기타과목을 100점으로 하여 설계비중을 높이면서 2급 건축사에게 유리하도록 했다고 답변하였으며 협회 임원들은 시험과목의 질이 다르다고는 하나 시험문제가 유사하므로 일부과목의 면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반영이 되도록 요청하였다.

이상으로서 간담회를 마쳤다. 소요시간 3시간